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15. 11. 11)

▶ 각 지자체 시달(오리부분 요약)

1. 추진배경

-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 환경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 강화
-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도 실행하면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 ▣ **(대책)** 축산 규모가 축산 규모가 큰 시·군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무허가 축사 개선

⇒ **(개선)** 132개(82.5%)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 지자체 권고 5회, (’15.9월) 160개 시·군 중 건폐율 60%인 지자체는 132개소(82.5%), 50% 12개소(7.5%), 20% 1개소(0.6%), 미 제정 14개소(8.8%)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 ▣ **(대책)**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시 분뇨를 처리한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어 무허가축사 유지

⇒ **(개선)** 육계·오리 축사에 대해 아래사항 모두 준수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

*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15.3.24 개정)

- ①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 ② 배출시설의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왕겨 또는 톱밥 등을고르게 깔것
- ③ 닭·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

다.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 ▣ (대책)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또는 권고안 개정을 통해 재 설정

⇒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 통보 ('15.3.31, 환경부)

* 권고안에 따라 지자체 조례 제·개정 필요(권고안 반영시 인센티브 지원 계획)

구분	기존 권고안 (환경부, '11.10.14)	금번 권고안 (환경부, '15.3.31)	비고
닭·오리	500m	2만수 미만	250m
		2만~5만수	450m
		5만수 이상	650m

동 권고안은 신규 입지하는 시설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

라.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 ▣ (대책) 가축분뇨법 개정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
-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

⇒ (개선) 법 시행일로부터 3년('15.3.25~'18. 3.24)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라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가능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를 제출하여 증명 필요

마. 기타(대책 외 제도개선)

- ▣ (위탁사육금지) 무허가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유예
- * 농해수위 황주홍의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5.1.23)

⇒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 ▣ (이행강제금) 불법 건축물(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규정('14.11.13. FTA 여야정 합의사항)
- *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4.8.21)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현 50% → 40% 이내)

3. 인·허가 등 처리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 현지 측량 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의뢰
---------------	----------------------------------------------------------------------------------------------------------------------------------------------------------------------------------------------------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자진신고서 작성후 시·군 민원 실에 제출
-----------------	-----------------------------



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시·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 (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 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 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	---------------------------------------------------------------------------------------------------------------------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3일 이내 처리)
------------------	-----------------------------------------------------------------------------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 ‘건 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 하는 ‘건축신고서’ 작성하여 시·군 민원실 제출
------------------	------------------------------------------------------------------------------



⑥ 가축분뇨처 리 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 표 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 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 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 이내 (신고 5일))
----------------------------------	-------------------------------------------------------------------------------------------------------------------------------------------



⑦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신고(허가)	•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 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 경 신고
-------------------------------	----------------------------------------------------------------------

4. 주요 문답자료

【문 1-10】 민원 문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
는 연장조치 거부, 주민동의서 요구
에 따른 대처방안은?

○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
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
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
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함

○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
류에 포함되지 않음

【문 1-13】 육계·오리 축사의 처리시설 설치의
무 면제후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
뇨의 처리 방법은?

○ 가축분뇨처리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
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게 제공(위탁처리)가
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
톤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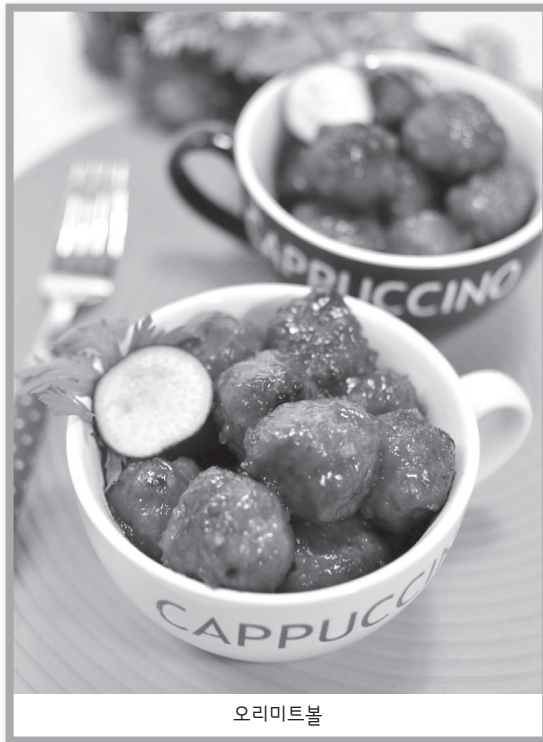
- 이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위탁처리내역
에 작성관리 해야함

【문 1-14】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의 제한 시기는?

○ '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에 위탁사육을 할 수 없음

*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 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축사에 위탁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탁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8.3.24, 한센인촌 '19.3.24)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국회 법사위 계류중, '15.10.28) 중에 있음('16년 상반기 시행 예정)



오리미트볼